

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6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9. 6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자연발생유원지 허가제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6조제3항 및 제5항)
- 자연발생유원지 허가취소 조항을 삭제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

4. 본 문 :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“제3항 및 제5항”을 삭제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 표

현	개
행	정
안	안
<p>제6조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<u>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삭제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삭제></p>
<p>제7조(허가취소) <u>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</u> 2. <u>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</u> 3. <u>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</u> 4. <u>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</u> 5. <u>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케 한 때</u> 6. <u>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</u> 	<p>제7조(허가취소) <삭제></p>